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36
----------	------

2020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0년 8월 12일
- 다. 회부일 : 2020년 8월 21일
- 라. 상정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가 시행('20.1.4.)됨에 따라 우리 시는 행복기본계획 수립,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행복정책 공동 개발 및 연구,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타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행복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는 현재 36개의 지자체(서울시 7개 자치구 포함)로 구성되어 국내외 행복정책 우수사례 연구 및 행복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우리 시의 행복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지자체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효과적인 협력체계로서 작용할 것임.

나. 주요내용

가) 협의회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 명칭 :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 구성 : 36개 지자체 ('18.10.17. 창립총회 개최)

(2020.6월 기준)

서울(8)	경기(6)	강원(3)	인천(3)	대전(2)	충청(5)	전라(4)	경상(2)	광주(3)
서울시, 종로, 도봉, 은평, 양천, 강남, 성동, 서대문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서구, 연수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증평군, 서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나주시	구미시, 의성군	서구, 동구, 광산구

※ 상임회장(김승수 전주시장), 사무국(서울시 서초구 소재, 사무국장 김현희)

- 회의운영 : 정기회는 연2회 개최

※ 임시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

나) 협의회 기능

-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20년도 예산 기 편성).

- 매년 협의회 분담금(7백만원)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및 필요성 검토

- 본 동의안(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분담금 7백만원)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얻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령(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152조제2항)에 따라¹⁾ 제출한 것임.

<행정협의회 개요>

▶ 개념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

▶ 목적

-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개요>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전후하여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행복 협약을 체결한 39명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 것으로,
- 향후 정책 추진 시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창립하였고,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명 칭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 상임회장 : 전북 전주시장 / 사무총장: 경기도 여주시장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설립목적 :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추구

○ 설립 일 : 2018. 10. 17.

○ 주요기능

-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등

○ 가입대상 : 전국 기초자치단체 / 현재 36개 지자체 가입('20.8.10.기준)

○ 연 회 비 : 인구 30만명 미만 500만원 / 30만명 이상 700만원

- 동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전·후에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행복 협약”을 체결한 39명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발족하였으며, 2018년 10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 현재,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36개이며(참고자료 1 참조), 협의회 규약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이미 받은 자치단체는 29개 (81.0%, 2020년 8월 기준, 참고자료 2 참조)수준임.

※ 구 성 : 3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18.10.17. 창립총회 개최)
(2020.6월 기준)

1)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서울(8)	경기(6)	강원(3)	인천(3)	대전(2)	충청(5)	전라(4)	경상(2)	광주(3)
서울시, 종로, 도봉, 은평, 양천, 강남, 성동, 서대문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서구, 연수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증평군, 서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나주시	구미시, 의성군	서구, 동구, 광산구

※ 상임회장(김승수 전주시장), 사무국(서울시 서초구 소재, 사무국장 김현희)

- 동 협의회 구성이후 매년 정기 총회를 실시하고, 공직자 연수, 심포지엄 등을 추진한바 있음.

▶ 추진 경위

- '18. 5~7 행복실감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협약 체결
(※ 전국 50여 단체장 후보 중 39명 당선)
- '18. 9. 8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 변경
- '18.10.17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수원시 개최 / 규약채택,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승인, 창립선언문 채택)
- '19.03.20 제2차 정기총회 개최
- '19.10.17 제3차 정기총회 개최
- '20.06.11 제4차 정기총회 개최

▶ 주요 실적

- '18.10.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 '19.02.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공직자 교육·연수
- '19.03. 자치분권시대 행복지표개발 연구사업
- 참여 지자체 : 전주시, 여주시 등 14개 지자체
- '19.03.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 '19.06. 행복 정책 심포지엄
- '19.08. 행복정책 국외 연수사업
- '19.10. 협의회 창립 1주년 국제 심포지엄
- '19.12. 행복 정책 심포지엄
- '20.03. 지역 주민행복도조사 연구용역 착수 : 7개 지자체 참여

- 참여 지자체 : 광주 광산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의성군 등
- '20.04. 총행복포럼
- '20.04.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백서 '행복나라' 발간
- '20.06. **공직자 연수 행복정책아카데미**
- '20.07. 국회 국민총행복(GNH)연구모임 창립 심포지엄

- 동 협의회는 주요 기능으로는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 등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서울시가 동 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서울시의 행복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효과적인 협력체계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협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능이 추상적이고, 주요 추진 사업 중 공직자 연수와 심포지엄의 비중이 크며, 지방자치단체별 행복 지수 구축 및 정책을 획일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 협의회는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 3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최초로 가입하게 되는데, 기초 자치단체 위주의 정책 논의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참여가 바람직한지 여부와 서울시에게 유익한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혁신기획관²⁾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금 예산을 편성

2) 2020년 7월 업무 이관(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하여야 함에도 동 협의회에 대한 의회 의결 이전에 미리 분담금 예산을 편성(2020년도 기초실 편성, 7백만원) 한 것은 ‘예산의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주요내용 검토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은 목적, 기능, 사무국 운영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운영규약 체계 및 주요 내용>

규정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명칭)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제2조(목적)	-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
제3조(기능)	-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 구성, 결의사항 준수, 회비 납부
제5조~제6조(임원, 임기)	- 공동회장 3명 등, 임기 2년 1회 연임
제7조~제8조(회의 및 의결, 회장단 회의)	- 정기회의 연2회,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회장단회의 공동회장이 필요시
제9조~제11조(의안제출, 안건배부 등)	- 20일 전까지 제출 - 필요시 의견제출 협조 요청
제12조(회의결과 조치)	- 회의록 작성, 회원에게 통보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 - 광역자치단체장은 당연직 자문위원
제14조~제16조(분과위원)	-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형 행복정책'을 본격 추진하고자 전환도시담당관 내 「시민 행복팀」신설(증: 행정 5급 1명, 행정 6급 2명, 행정 7급 1명)

회 설치, 실무협의회, 사무국)	-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제17조(경비부담)	- 공동사무 처리에 따른 필요경비 공동 부담
제18조(수당 등)	- 자문위원에게 실비 지급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 정기회의에서 집행상황 보고
제20조(규약개정)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제21조(운영세칙)	- 규정 이외의 것은 회장단 의결로 정함

○ 동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협의회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운영규약에 해산시 재산의 귀속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후 운영규약 개정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운영규약 제13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당연직 고문위원이 되는 바, 동 협의회 참여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에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한편, 지방정부협의회 등 행정협의회는 법 제157조³⁾에 따라,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협력이 아닌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정부분 구속력이 있는바, 협의회 가입 및 활동에 정책적인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운영규약 등에 대한 의회의 동의이후에도 사업시행 과정상 추진사항에 대한 의회보고 및 협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³⁾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736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가 시행(’20.1.4.)됨에 따라 우리시는 행복기본계획 수립,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행복정책 공동 개발 및 연구, 지자체 우수 사례 공유 등을 위한 타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나.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는 현재 36개의 지자체(서울시 7개 자치구 포함)로 구성되어 국내외 행복정책 우수사례 연구 및 행복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우리시의 행복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효과적인 협력체계로서 작용할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 명칭 :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 구 성 : 36개 지자체 ('18.10.17. 창립총회 개최)

(2020.6월 기준)

서울(8)	경기(6)	강원(3)	인천(3)	대전(2)	충청(5)	전라(4)	경상(2)	광주(3)
서울시, 종로, 도봉, 은평, 양천, 강남, 성동, 서대문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서구, 연수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증평군, 서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나주시	구미시, 의성군	서구, 동구, 광산구

※ 상임회장(김승수 전주시장), 사무국(서울시 서초구 소재, 사무국장 김현희)

○ 회의운영 : 정기회는 연2회 개최

※ 임시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

나. 협의회 기능

-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 그 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20년도 예산 기 편성)

- 매년 협의회 분담금(7백만원)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전환도시담당관 전환도시정책팀 임승현(☎ 2133-7985)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②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 혹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세칙

· 2018. 10.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이하 “사무국” 이라 한다)의 활동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사무국) ①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복실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행복실현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입안
2.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등
3.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결과 관리
4.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5. 기타 협의회와 협의·관련된 사항

③ 사무국 위탁 및 운영경비는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제4조(사무국장관과 직원) ① 사무국장관과 사무직원은 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 균등하게 파견받아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받아 임명 할 수 있다.

②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사무국장관과 사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무국장관과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협의회 업무에 전담하도록 하고,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